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20. 12. 8.(화) 10: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안동 영양남씨 남홍재사 지정 | |
| 2 | 통영 문화동 벽수 이전 | |
| 3 |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심의) | |
| 4 |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5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
| 6 |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개축 | |
| 7 | 안동 하회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
| 8 | 정읍 김명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
| 9 | 수원 광주이씨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
| 10 | 무안 유교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
| 11 | 신안 김환기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

【검토사항】

- | | | |
|----|-----------------------|--|
| 12 | 남양주 궁집 종합정비계획 수립(재검토) | |
|----|-----------------------|--|

【보고사항】

- | | | |
|----|-----------------|--|
| 13 |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
|----|-----------------|--|

심 의 사 항

1.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소재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소재 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28호 「남흥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2016. 12. 9.) 결과 : 지정가치 있음.
- 지정예고(2020.10. 22.부터 3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단, 예고기간 중 토지면적 오류 확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安東 英陽南氏 南興齋舍/ Namheungjaesa Ritual House of the Yeongyang Nam Clan, Andong)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와룡면 남흥길 108-16(중가구리 532)
 - 소유자 : 영양남씨안동파남흥문중
 - 수 량
 - 건축물 지정 : 1동 247.7m²

명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재사	조선시대	목조, 정침 3량가, 원모루 5량가, 정면 5칸, 좌측면 6칸, 우측면 5칸, 口자형	247.7m ²	영양남씨안동파남흥문중

- 토지 지정 : 당초 1,284.1m²(2필지) → 변경 1,303.9m²(2필지, 증 19.8m²)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당초지정	변경지정	소유자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532	대	3,230m ²	1,034.5m ²	1049.8m ²	영양남씨안동파남흥문중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산30	임	43,240m ²	249.6m ²	254.1m ²	영양남씨안동파남흥문중
계			46,470m ²	1,284.1m ²	1,303.9m ²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불임 참조

<문화재위원 ○○○>

- 남홍재사는 영양남씨 남홍 문중에서 조상의 묘소를 수호하고 시제를 받들기 위한 공간이다. 이 재사가 처음 건립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774년 중수한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에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지방문화재 지정보고서(1981년)에서 “이러한 양식은 임진란 이전에 유행하던 양식으로 조선 초기의 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중기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나 조선 숙종(肅宗, 1674~1720) 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수용하면 남홍재사는 적어도 300년에서 400년 이상 되었고, 경북북부 지역에 서만 볼 수 있는 누(樓)가 있고, 규모도 큰 재실이다.
- 이 재사가 갖는 특징과 의미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남홍재사의 건물은 한 문중의 씨족결합과 조상숭배의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유교적 의례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공간이다. 공간배치도 씨족의 위계에 따라 씨족의 가장 상징인 종손의 방은 문중의 원로들이 모인 옷방과 옷방과 연결된 유사방 그리고 누마루와도 연결되어 중요한 위치에 배치하여 독립적이면서 문중성원들과 소통하도록 하였다. 즉, 종손을 중심으로 공간을 분할하면서 참여한 문중성원들의 역할에 따라 공간을 배분하고 있다.
- 남홍재사는 처음 남홍 입향조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민생(1349~1407)의 묘소를 수호하고 제향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하였지만, 묘소를 실전(失傳)하여 단을 만든 2세에서 5세까지 조상에 대한 제사도 이 재사에서 준비하고 지낸다. 이 재사를 통해 유교적 조상숭배의식과 씨족의 결합과정을 잘 볼 수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현재도 후손들이 거의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 재사가 불교 사찰을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은 조선시대 유교적 이념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처한 환경과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이와같이 남홍재사는 의례공간으로서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고 이외에 족보 편찬을 하는 공간 등은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문중행사의 중심 공간이다. 재사가 건물 자체로 역사성을 가지며, 영양남씨 남홍문중의 조상숭배 의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봄·가을에 올리던 제향이 가을만 올리거나, 참여자의 숫자가 줄었을 뿐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위원 ○○○>

- 남홍재사는 고려 말기에 전리판서를 지낸 남회주와 공조참판 남민생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실건축이다. 口자형 배치에서 벗어난 형태로 우측에 누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향하여 정침과 이어져 있는 구조이며, 정침 영역, 문간채 영역, 원모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축적 특징으로는 건물과 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통합형으로 누마루와 정침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구획된 형태이다. 이와 같은 배치는 안동문화권에서 우계이씨재사가 있을 정도로 희귀한 편이다. 또 안동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팔작지붕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남홍재사는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후면 복합형 지붕 형태이다. 이러한 평면과 지붕 구성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대량, 보아지, 공포, 대공, 주두, 소로 등을 비롯한 다수 가구 부재에서 고식의 형태가 나타나고 정침 대청 기둥의 모접기와 원모루에서 나타나는 영쌍창, 문틀의 결구 등 고식의 기법들이 잘 남아있다.
- 종합적으로 남홍재사는 재사 고유의 기능공간과 생활공간인 단일 건물 안에서 누(樓)가 결합된 재사 건물로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고식의 건축수법이 남아있다는 점, 건축의 중수기록이 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18세기 재사 건축의 희소한 사례로서 건축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

- 남홍재사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강당(講堂)과 재실(齋室 또는 廚舍), 누각(樓閣)의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서 ‘口’자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실들은 안마당을 향해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는 등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지역 재사 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재사 내 설치한 누각 역시 지역적 보편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우익사에 붙어 있는 누각의 위치로 보아 다른 재사들과 구별되는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재사의 최초 건립 연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특히, 2층 누각의 형태와 구조 등) 변형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현재도 지속적으로 재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적기에 보수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 보존·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사 좌측편에 설치한 양봉 장비 등으로 인해 일부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이를 포함한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문화재 지정면적 오류에 대한 단순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지정예고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는 상황으로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 7. 29.	대상문화재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민속
	소속	전)○○○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유자 : 영양남씨 안동파 남흥문중(英陽南氏 安東派 南興門中)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남흥길 108-16(중가구리)
- 신청인 : 영양남씨 안동파 남흥문중(대표 : 남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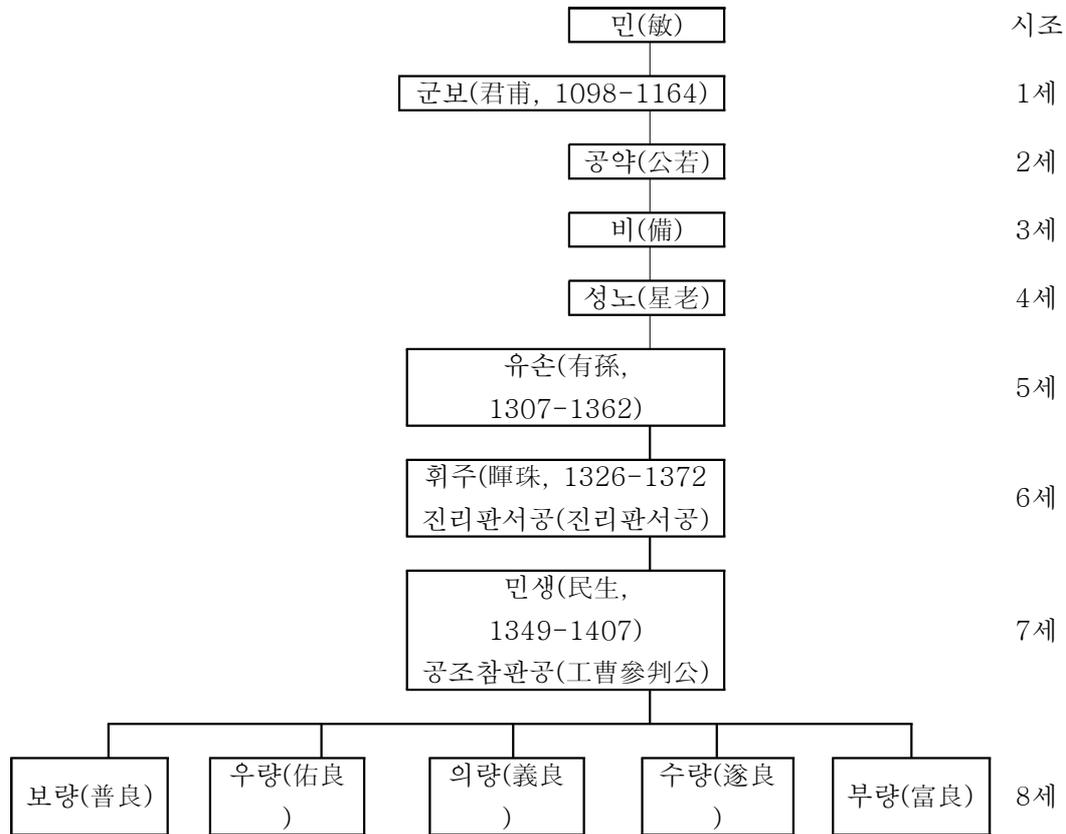
1. 영양남씨 안동파 남흥문중

안동의 영양남씨는 시조 남민(南敏)의 둘째 아들 남군보(南君甫, 1098-1164)를 파조로 하고 14세기 중엽 안동에 정착한 남휘주(南輝珠, 1326~1372)를 입향조로 하여 와룡면·일직면·풍산읍 일대에 세거해왔다.

『영가지(永嘉誌)』 「우거조(寓居條)」에 의하면 남공약의 현손인 남휘주가 처음으로 안동 서가현촌(西可峴村,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에 살았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전리판서(典理判書, 고려시대 전리사 정 3품 벼슬)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자세한 입향 경위는 알 수 없다.

남휘주의 아들 남민생(南敏生, 1348~1407)은 무과에 급제하여 호조참의를 지내고 5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5형제는 모두 무과에 급제하여 남부량(南富良)은 삼척진병마검절사, 남수량(南遂良)은 중령호군, 남의량(南義良)은 수의교위, 남우량(南佑良)은 회령도호부사, 남보량(南普良)은 만호를 역임했다.

영양남씨가 고려말기 안동에 거주하면서 재지사족(在地土族)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1478년 안동의 일부 사족(士族)의 원로 13명이 결성한 우향계【友鄉契,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태종 때 좌의정을 역임한 고성이씨(固城李氏) 이원(李原, 1368~1429)의 아들 이증(李增, 1419-1480)이 안동에 낙향하여 당시 안동의 나이 많고 덕이 높은 인물 12명(안동권씨 3명, 흥해배씨 4명, 영양남씨 4명, 안강노씨 1명)과 함께 조직한 모임】결성에 참여한 것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 우향계안(友鄉契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27호)을 보면, 남민생의 손자 진사공(進士公) 남치정(南致晶, 의양의 자)과 사직공(司直公) 남치공(南致恭, 우양의 자), 증손 남경신(南敬身, 부양의 손자)과 남경인(南敬仁, 부양의 손자) 등 흥해 배씨와 함께 4명으로 가장 많은 참가한 것으로 보아 사족(士族)으로서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후손들이 현재 안동에 흩어져 살고 있다.



영양남씨 남홍문중은 남홍 입향조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민생(1349-1407)의 묘소는 남홍리에 있다. 민생(民生)은 부사공(府使公, 삼척부사) 부량(富良), 중령공(中領公, 中領護軍), 수량(遂良), 수의공(修義公, 수의교위) 의량(義良), 회령공(會寧公, 회령도호부사) 우량(佑良), 만호공(萬戶公, 만호) 보량(普良) 등 5명을 두었는데, 거의 모든 후손들이 분가(分家)·분촌(分村)하여 남홍에서 안동의 다른 지역으로 이거하였고, 그들의 묘소도 모두 안동과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다.

2. 남홍제사(南興齋舍)와 시제(時祭)

1) 남홍제사의 건립

남홍제사는 영양남씨 선대의 묘소를 수호하고 묘제를 받들기 위한 공간이다. 특히, 고려 말기에 남홍에 입향한 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공조참판 남민생(南敏生, 1348~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후손들이 건립되었다.

남홍제사의 건립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74년에 이수연(李守淵,

1693~1750)이 쓴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와 1800년도에 적은 「남흥재사 중수상량문南興齋舍 重修上樑文」 등을 통하여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영양남씨 외척으로 성리학자인 진성이씨 이수연(李守淵, 1693-1750)이 쓴 중수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이 재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지 못하나 비바람에 시달려 기둥이 기울어지니 지난 경신년(庚申年) 묘사 때를 이용하여 재사를 수리할 자금을 조금씩 염출하기로 …… 5년이 지난 갑자년(甲子年)에 옛 모습으로 대강 복구되었으니…

② …재사의 제도는 방 5칸, 누 8칸, 좌우 익사가 10여 칸으로 매년 봄가을에 원근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 각기 소목으로 일을 받들었으며

③ 또한 남씨들이 지난날 족보가 없어 중간에 처사 표형과 진사 여형이 널리 증빙을 찾고 여러 예문을 참조하여 족보를 발간하여 널리 반질하고 그 책판을 재사에 보관하였다고 하니…

④ …기와의 굵고 재산을 늘려서 벗겨져 떨어지는 것은 때워주고 기둥의 썩은 것은 바꾸어주었으며 방의 미비한 것은 늘려주었다. 또 재계하는데 씻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자리와 술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였으며 격자창을 꾸미고 부엌의 부뚜막까지 새로 고쳤다. 나아가 누각에는 원모루라고 편액하니 이것이 집의 규모를 늘린 것이다. …

위와 같이 중수의 주요 내용은 ① 중수시기, ② 재실의 규모, ③ 재실의 기능, ④ 중수규모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재실 중수를 논의하고 시작한 것은 1740년(庚申年)이고, 중수가 끝난 것은 1744년(甲子年)이다. 규모는 방 5칸, 누 8칸, 좌우 익사가 10여 칸으로 중수하면서 방을 늘렸고, 부엌을 수리하고, 격자창을 만들고 번와를 하는 등 크게 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재실은 봄·가을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족보를 만들며 책판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 뒤 남흥재사는 1800년에 다시 한번 중수하였다는 사실이 중수상량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1774년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중수하면서 증·개축한 것이 거의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흥재사가 위치한 곳은 14세기 중엽 안동에 정착한 영양남씨 남휘주(南輝珠, 1326~1372)가 안동에 정착하면서 입향한 곳이다. 이곳이 남흥(南興)이란 지명은 영양남씨가 들어와서 흥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남흥사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남흥재사에는 남흥사의 법당을 개조했다는 설이 전하고 있다.

이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선시대에 전반적으로 불교의 사찰이 퇴락해 갔고, 사찰이 자리한 곳은 풍수적으로나 경관적인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므로 유교문화가 발달한 조선시대에는 사찰이나, 사찰의 목재로 유교적인 재사를 짓는데 활용한 사례가 있다. 남흥재사도 원모루의 기둥이나 부채 등이 과거 사찰에서 사용한 목재일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남흥재사 건물은 정침(正寢)과 누각(樓閣)인 원모루 등 이고, 평면구성은 ‘口’자형으로

본채와 원모루 각 두 채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남흥제사 전체영역 구분도

남흥제사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사에 제사를 비롯한 행사가 있으면 이곳 머물게 되는데, 각자의 역할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된다.

중손방은 중손이 머무는 방으로 2칸 통칸 규모이며, 누마루와 연결하고 있다. 옷방과 유사방과도 모두 연결되어 있어 여러 사람과 쉽게 소통하도록 한 구조이다. 옷방은 문중의 원로가 머무는 방으로 2칸 통칸 규모이며, 좌측의 옷방, 아래측의 중손방과 누마루와 연결되는 구조이다.

유사방은 유사(유사)가 머무는 방으로 1칸 규모이다. 유사(유사)는 묘제를 지낼 때 모든 행정 절차와 제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제사를 받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제수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유사방은 대청과 연결하고 있어 제사를 지내는 동안 유사(유사)가 진

두지휘하고 대청에서 제물과 제사 준비를 점검하는 동선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방은 1칸 규모로 대청 좌측에 위치하며, 제기 등 제사에 필요한 도구를 보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참제인방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참가하는 후손들이 머무는 방으로 2칸 통칸 규모 이루어져 있으며, 고방과 연결되는 구조이다.

원모루는 중층 누각형 건물로 하층은 헌관방, 제사방, 고방 등이 있다. 제사의 누마루는 제례를 행할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 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의해 차단과 개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폐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문중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면 담소를 나누거나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굿은 날씨에 묘제를 묘소에서 지낼 수 없을 때는 망제를 지내기도 한다. 또한, 제관들의 임무를 지정하는 분정례를 행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다음 제사 때를 준비하는 망기(望記)를 작성하는 장소로도 쓰인다.

헌관방은 제사를 지낼 때 헌관(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머무르는 방이다.

2) 시제(時祭)

영양남씨 문중은 매년 가을이면 조상들의 시제를 모시기 위해 남흥재사에 모여 준비한다. 남흥재사의 중수기에 따르면 봄·가을에 묘제를 지냈고 하나, 현재는 음력 10월 15일에 가을에 한번 올린다. 남흥재사가 고려 말기에 남흥에 입향한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공조참판 남민생(南敏生, 1348~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재사가 있는 남흥마을에는 두 사람의 묘소 이외에 묘소를 찾을 수 없는 2세에서 5세까지 단소(壇所)가 있다.

문중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2세에서 5세까지 단소(壇所)와 6세 휘주, 7세 민생의 묘소에서 각각 시제를 올는데, 그 준비를 남흥재사에 한다.

시제는 1~2일 전에 장보기와 제수 준비를 하고 묘소 및 주변 청소를 한다. 제사의 모든 비용은 남흥문중에서 부담한다. 이때 유사는 재실에서 참제인들의 시도기를 작성하고, 분정과 축문을 작성한다. 집사분정(執事分定)은 종손과 문중대표 등이 의논하여 항렬과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물의 진설은 4열에 과실로 좌측에서부터 대추, 밤, 배, 감, 사과를 진설하고 3열에는 숙채로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3가지를 놓고, 면을 놓는다. 2열에는 도적과 편, 탕(육탕), 메, 갯을 놓고 1열에는 술잔을 차린다.

진설이 끝나면 홀기에 따라 강신-초헌-아헌-종헌 순서로 진행된다. 시제가 끝나면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삼헌(三獻)이 아니고 단헌(單獻)으로 하며 초헌관과 유사한 사람과 축관이 지낸다. 제물은 제상에 올리지 않고 한지에 시루떡, 명태, 닭고기, 대추, 밤, 배, 사과, 조기 등을 진설한다.

산신제山神祭가 끝난 후 모든 참제가들은 재사齋舍로 내려가서 음복을 한다. 음복상은 종손을 비롯한 문중 원로들은 원모루 대청에서, 일반 참제인들은 재사齋舍 마당에 차린

다. 예전에는 독상을 받았으나, 지금은 여러 사람이 겸상을 한다. 음복 음식은 별도 마련한 것이고, 제물에 사용한 음식은 나누어서 어른이 있는 집에 ‘봉기’를 하여 보낸다.

시제 이외에 재사에서는 재사를 중수하거나, 중대한 일을 치른 후에 지내는 고유제가 있다. 남흥재사에서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고하기 위해 2019년 6월 19일에 고유제를 실시하였다.

3. 조사자 의견

남흥재사는 영양남씨 남흥 문중에서 조상의 묘소를 수호하고 시제를 받들기 위한 공간이다. 이 재사가 처음 건립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774년 중수한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에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지방문화재 지정보고서(1981년)에서 “이러한 양식은 임진란 이전에 유행하던 양식으로 조선 초기의 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중기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나 조선 숙종(肅宗, 1674~1720) 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수용하면 남흥재사는 적어도 300년에서 400년 이상 되었고, 경북북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루(樓)가 있고, 규모도 큰 재실이다.

이 재사가 갖는 특징과 의미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1. 남흥재사의 건물은 한 문중의 씨족결합과 조상숭배의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유교적 의례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공간이다. 공간배치도 씨족의 위계에 따라 씨족의 가장 상징인 종손의 방은 문중의 원로들이 모인 웃방과 웃방과 연결된 유사방 그리고 누마루와도 연결되어 중요한 위치에 배치하여 독립적이면서 문중성원들과 소통하도록 하였다. 즉, 종손을 중심으로 공간을 분할하면서 참여한 문중성원들의 역할에 따라 공간을 배분하고 있다.
2. 남흥재사는 처음 남흥 입향조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민생(, 1349-1407)의 묘소를 수호하고 제향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하였지만, 묘소를 실전(失傳)하여 단을 만든 2세에서 5세까지 조상에 대한 제사도 이 재사에서 준비하고 지낸다. 이 재사를 통해 유교적 조상숭배의식과 씨족의 결합과정을 잘 볼 수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현재도 후손들이 거의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3. 재사가 불교 사찰을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은 조선시대 유교적 이념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처한 환경과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흥재사는 의례공간으로서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고 이외에 족보편찬을 하는 공간 등은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문중행사의 중심 공간이다. 재사가 건물 자체로 역사성을 가지며, 영양남씨 남흥문중의 조상숭배 의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봄·가을에 올리던 제향이 가을만 올리거나, 참여자의 숫자가 줄었을 뿐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주요 지정 사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남흥재사는 와룡면 중가구리 남흥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남흥마을은 고려 말엽에 영양남씨가 처음 입향하여 개척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영양남씨가 마을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남흥사(南興寺)라는 절이 있어서 남흥이라 불렀다는 설과 영양남씨가 마을에 들어와서 번창하게 되어 남흥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다.</p> <p>남흥재사는 원래 남흥사(南興寺)라는 법당을 개조한 건물로 지명에 따라 남흥재사로 이름을 붙였다고 하나 사찰과 연관되었다는 근거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남흥재사가 고려 말기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와 공조참판 남민생(南敏生)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는 설이 있다.</p>
	검토	<p>남흥재사의 초창에 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중수에 관련된 기록은 청벽(靑壁) 이수연(李守淵)이 기록한 원모루의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 『청벽선생문집(靑壁先生文集)』에 기록된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 2018년에 남흥재사를 중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남흥재사 중수상량문」에서 알 수 있다. 이수연이 기록한 남흥재사 중수기에는 ‘송정후재갑자칠월(崇禎後再甲子七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송정후 첫 번째 갑자년은 1684년이며, 두 번째 갑자년이 1744년으로 이수연의 생몰연도와 비슷하여 1744년에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p> <p>재사의 규모와 증개축에 관한 내용은 영양남씨 족보에도 나타나는데 기록에 의하면 방 5칸, 좌·우 익사 10여 칸, 누 8칸의 규모로 봄·가을에 향사를 지냈다고 한다. 또한 중수하면서 원모루에 편액하였다. 중수에 대한 기록은 기둥과 기와 보수, 방 증축, 부엌</p>
	연혁·유래 및 특징	

보수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보수하면서 증·개축이 있었고 현재의 모습은 중수 이후의 모습으로 보여 진다.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전면 보수를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의 보수이력은 다음과 같다.

- 18C 이전 남홍사를 개조하여 사용
- 1744년 중수 / 원모루 편액
- 1800년 중수
- 1981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 /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 1993년 화장실 개축
- 1995년 부분 보수 및 단소 조성
- 1998년 전체보수
- 2016년~2019년 전체보수

남홍재사의 건축적 특징으로 배치는 전형적인 口자형 배치에서 벗어나 우측에 누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향하여 정침과 이어져 있는 구조이며, 정침 영역, 문간채 영역, 원모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사 좌측에는 화장실 1동이 위치하고 있다.

남홍재사는 건물과 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통합형으로 누마루와 정침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구획되는데 이와 같은 배치는 안동 문화권에서 우계이씨재사가 있다. 또 안동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팔작지붕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남홍재사는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후면 복합형 지붕 형태이다. 이러한 평면과 지붕 구성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남홍재사에서는 대량, 보아지, 공포, 대공, 주두, 소로 등을 비롯한 다수 가구 부재에서 고식의 형태가 나타나며, 정침 대청 기둥의 모접기와 원모루에서 나타나는 영쌍창, 문틀의 결구 등 고식의 기법들이 잘 남아있다. 이러한 양식들은 18세기 이전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식으로 남홍재사의 중수시기인 1744년과 그 시기가 상통한다.

남홍재사는 재사 고유의 기능공간과 생활공간인 단일 건물 안에서 루가 결합된 재사 건물로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고식의 건축수법이 남아있다는 점, 건축의 중수기록이 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18세기 재사 건축의 희소한 사례로서 건축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p>남홍재사는 고려 말기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공조참판 남민생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실건축이다. □자형 배치에서 벗어남 형태로 우측에 누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향하여 정침과 이어져 있는 구조이며, 정침 영역, 문간채 영역, 원모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p> <p>건축적 특징으로는 남홍재사는 건물과 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통합형으로 누마루와 정침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구획된 형태이다. 이와 같은 배치는 안동문화권에서 우계이씨재사가 있을 정도로 희귀한 편이다. 또 안동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팔작지붕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남홍재사는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후면 복합형 지붕 형태이다. 이러한 평면과 지붕 구성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p> <p>남홍재사에서는 대량, 보아지, 공포, 대공, 주두, 소로 등을 비롯한 다수 가구 부재에서 고식의 형태가 나타나고 정침 대청 기둥의 모접기와 원모루에서 나타나는 영쌍창, 문틀의 결구 등 고식의 기법들이 잘 남아있다.</p> <p>종합적으로 남홍재사는 재사 고유의 기능공간과 생활공간인 단일 건물 안에서 루가 결합된 재사 건물로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고식의 건축수법이 남아있다는 점, 건축의 중수기록이 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18세기 재사 건축의 희소한 사례로서 건축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p>	
	지정 대상 및 범위	<p><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p> <p><보호물></p> <p><보호구역></p>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남홍재사는 고려 말기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공조참판 남민생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실건축인데 □자형의 배치와 정침 영역, 문간채 영역, 원모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p> <p>건축적 특징으로는 남홍재사는 건물과 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p>	

통합형으로 누마루와 정침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구획된 형태라는 점과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후면 복합형 지붕 형태라는 점, 대량, 보아지, 공포, 대공, 주두, 소로 등을 비롯한 다수 가구 부재에서 고식의 형태가 나타나고 정침 대청 기둥의 모접기와 원모루에서 나타나는 영쌍창, 문틀의 결구 등에서 18세기 재사건축의 고식기법들이 잘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국가문화재의 지정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7.29.	대상문화재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	직위(직책)	문화재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안동(安東) 영양남씨(英陽南氏) 남흥재사(南興齋舍)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남흥재사 주변 일곽(좌측편 화장실 포함) <보호물> 별도 해당사항 없음 <보호구역> 별도 해당사항 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기 고시된 허용기준에 준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원형 보존 원칙에 의거하여 본래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종합의견	경북 북부지역 재사 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 주변의 다른 재사와 구별되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음. 다만, 최초 건립 연대를 비롯하여 원형 및 변형의 유무, 정도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문화재전문위원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남흥재사(南興齋舍)는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남흥마을의 가장 위쪽 경사지에 남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재사 건축의 경우 대부분 묘가 있는 산중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 재사는 마을 내에 건립되었다. 묘소는 마을로 들어서기 전 왼쪽 기슭에 유허비와 함께 조성되어 있다.
- ‘남흥(南興)’이라는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2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양남씨가 입향한 이래 후손들이 번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영양남씨가 입향하기 이전부터 이미 남흥사(南興寺)라는 사찰이 있었기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 안동 영양남씨는 시조 남민(南敏)의 둘째 아들인 남군보(南君甫)를 파시조로 하며, 14세기 중엽 안동에 정착한 6세(世) 남휘주(南暉珠, 1326-1372)를 입향조로 하여 오늘날 안동시 와룡면, 일직면, 풍산읍 일대에 세거(世居)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남흥재사는 고려말 전리판서를 지낸 입향조 남휘주와 함께 공조참판을 지낸 7세(世) 남민생(南敏生, 1348-1407)을 포함하여 모두 6위의 묘제(매년 음력 10월15일)를 지내기 위해 건립한 재사(齋舍)이다.
- 창건(創建)과 관련 하여서는 최초, 남흥사(南興寺)의 범당을 개조한 것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은 확인 할 수 없다. 다만, 청벽(靑巒) 이수연(李守淵, 1693~1750)이 작성한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에 “崇禎後再甲子七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1744년에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2016년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수상량문(重修上梁文)》의 기록(“三十年嘉慶五年庚申正月二十七日”)을 통해서 볼 때, 54년 후 1800년에 한 차례의 중수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남흥재사중수기》에 따르면, 최초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중수 당시 대략적인 규모는 엿볼 수 있는데, 방(房) 5칸과 누(樓) 8칸, 좌우 익랑(翼廊) 10여 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수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나 공사가 완성되었는데, 기둥 및 기와 보수, 방 증축, 부엌 보수 등이 있었다. 《중수상량문》은 전문이 아닌 일부 내용만 확인되는데, 입주 및 상량 날짜·시간과 함께 도감(都監)이라는 글자가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목수 등의 이름을 기록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 남홍재사는 남북방향으로 경사진 대지에 남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안마당을 중심으로 강당(講堂)과 재실(齋室 또는 廚舍), 누각(樓閣)의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서 ‘口’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즉, 정면 동·서 방향으로 길게 위치한 대문간채는 정면1칸×측면1칸 규모의 말방과 마구간, 대문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좌측편으로는 좌익사의 형태로 부엌, 참제인방, 고방 등이 연결되어 있다. 반대편에는 2층 누각(樓閣)을 포함한 우익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안마당 뒤편의 가장 안쪽에는 대청(大廳)을 중심으로 고방과 유사방, 윗방, 종손방 등의 각 실들이 ‘一’자 형태, 다시말해 중당협실형(中堂夾室型)의 평면구성을 취하며 좌·우익사와 연결되어 있다.
- 재사 건물에 2층 누각이 있는 경우는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비교적 큰 재사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건축적 수법으로, 남홍재사가 위치한 안동을 중심으로 예천, 봉화, 영주 등의 지역에서 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때, 누각의 위치가 재사와 별동으로 분리되어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면 및 좌·우익사 등에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남홍재사는 우익사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 다만, 남홍재사의 누각 축이 서쪽으로 약간 틀어져 배치되어 있는데, 최초 건립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후에 중수과정에서 변형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유희비 및 묘소와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 누각의 평면은 정면3칸×측면2칸의 총 6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붕의 형태로 보면, 정면2칸×측면2칸과 정면1칸×측면2칸의 맞배지붕을 서로 직교하게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丁’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붕가구에서의 도리와 보의 결구수법이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누각에 사용된 서까래의 길이가 연결한 실에 비해 길어, 지붕 처마선이 서로 다르게 처리된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진정성 측면에서 원형의 여부에 대한 고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누각의 하층부는 지형의 경사면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여 고방, 제사방, 헌관방 등의 다양한 실을 구성하였으며, 누각의 상층 우물마루 바닥 청판을 들어 올리면 하층의 고방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재사의 기능에 맞춰 활동의 편리를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 남홍재사의 가구구조는 기본적으로 3량의 민도리집으로 단순하게 짜 맞추었으나, 누각은 5량의 소로수장집으로 하였고 기둥 상부에는 익공형식의 공포와 함께 주두, 장여, 창방 등으로 결구하였다. 또한, 누각에 사용된 대공 및 공포, 주두, 보아지 등의 부재에서 확인되는 고식의 형태와 다양한 치목 수법 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 과정에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되었기 보다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구부재를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안쪽 대청 공간에 사용된 방주의 모접기 수법 역시 매우 특징적으로 보인다.

- 벽체는 전반적으로 제사벽으로 마감하였으나, 문간채와 누각 상층부와 하층부 일부에는 판벽을 사용하였다. 천정은 누각의 경우에는 연등천정으로 하여 상부의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되게 하였으며, 나머지 온돌방 대부분은 소경천정 또는 지반자로 마감하였다. 창호는 외여단이 세살청판문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쌍여단이 만자살문을 사용하였으나, 누각 상층부에는 판문과 함께 영쌍창(靈雙窓)을 사용하여 초창 또는 중수에 따른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지붕은 전체적으로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이 섞여 있으며, 또한 정면 좌측과 우측에는 소위, 서산각과 우산각 지붕으로 서로 달리 하였고 우측면에만 풍판을 설치하였다. 재사 건물 좌측편으로는 정면2칸×측면1칸 규모의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초가지붕이었으나 1993년 보수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기와로 교체하였다.
- 남홍재사는 1981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된 이후 1993년과 , 1995년, 1998년, 2016년~2019년에 크고 작은 보수 및 시설공사가 등이 있어 왔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남홍재사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강당(講堂)과 재실(齋室 또는 廚舍), 누각(樓閣)의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서 ‘口’자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실들은 안마당을 향해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는 등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지역 재사 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재사 내 설치한 누각 역시 지역적 보편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우익사에 붙어 있는 누각의 위치로 보아 다른 재사들과 구별되는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재사의 최초 건립 연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특히, 2층 누각의 형태와 구조 등) 변형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현재도 지속적으로 재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적기에 보수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 보존·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사 좌측편에 설치한 양봉 장비 등으로 인해 일부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이를 포함한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통영 문화동 벽수 이전

가. 제안사항

경남 통영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7호 「통영 문화동 벽수」를 원 위치로 이전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83년 세병관 진입로 확장공사로 이전되었던 통영 문화동 벽수를 통영시의 '통제영거리 조성 사업(2010~)'으로 원위치로의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이전하는 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통영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7호 「통영 문화동 벽수」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118-5
- (3) 신청내용 : 통영 문화동 벽수 원위치¹⁾ 이전
 - (현행)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118-5
 - (계획)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392-7

라. 검토의견(무형문화재과)

- 동 건물은 1983년 도로확장 공사로 이전되었던 벽수를 통영시의 통제영거리 조성 사업(2010년 문화자원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시작)으로 원위치로의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이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임.
- 현재 해당 문화재 향 우측에 이전 이력이 적혀 있는 비석²⁾이 있고 문화재

1) [통영 문화동 벽수 문화재대장 발췌]

○ 1983.01.06.~02.05 위치 변경 : 문화동 95-123 간에 있던 벽수를 세병관 진입로 확장공사로 문화동 118-3, 122-1로 이전

청의 문화재 관리대장에도 이전에 대한 기록이 있는 만큼 원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해당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원위치로 이전하기 위해 정확한 이전 위치 선정을 포함한 사업 초기단계부터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남해지도에 수록된 벽수 위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부.

2. 통제영 거리 조성 조감도 1부.

2) 표석 문안 : '벽수는 처음 도로 아래쪽 25미터 지점(문화동 95. 123간)에 있었으나 세워진지 77년 만인 1983년 1월 25일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이곳으로 옮겨 세웠음'

[붙임 1]

남해지도(19세기에)에 수록된 벽수 위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붙임 2]

통제영거리 조성 조감도



우물 유구
*통제영 거리 조성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3.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이격거리 약 134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 : 개별심의
- 본 안건은 2020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6. 9.), 제6차 문화재위원회(11. 10.)에서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된 사안으로 침실, 주방, 거실의 너비와 처마 내밀기 등 일부를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분	'20. 1차 신청(부결)	'20. 2차 신청(부결)	금회 신청
층수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면적	65.61㎡	56㎡(감 6.61㎡)	57.2㎡(증 1.2㎡)
높이	4.8m	6.08m(증 1.28m)	6.08m(증 1.28m)
구조/지붕	목구조/한식기와	목구조/한식기와	목구조/한식기와
외벽	마그네슘보드, 황토미장	황토미장, 회벽마감	황토미장, 회벽마감
형태	┌자형	┐자형	┐자형
기타		침실2 2.7m→3.0m, 주방 3.0m→2.7m, 거실 2.7m→3.0m, 목재 처마내밀기 1.35m→1.3m, 풍판 60cm 축소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위원 ○○○/2020. 11. 25.)

- 재신청안은 침실, 주방, 거실의 너비를 조정하고, 몸채 처마를 일부 조정하였으나, 건물의 매스와 장·단변의 비례 등은 기존안과 유사하므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4.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16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60㎡
 - 건축규모 : 지상 1층, 건축면적 112.14㎡, 높이 6.3m
 - * 보강토옹벽 설치 : 높이 1~3m, 길이 115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붕/외벽 : 경사지붕_아연도 강판(징크) / 치장벽돌 쌓기
 - 기타(조경식재) : 교목 10주, 관목 150주

라. 현지조사 의견서(문화재전문위원 ○○○/2020. 11. 23.)

-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약 160m 이격) 내 단독주택 1동을 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축 대상지와 해당문화재 사이에 수목이 있는 구릉이 위치하고 있고, 신축 예정인 주택 높이를 감안할 때, 시각적 간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축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경작지(논밭)로서 목가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는 만큼, 신축 공사로 인한 성토 및 보강토옹벽 설치 등으로 주변 경관 훼손이 어느 정도 예상되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 생활시설 신축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문화재지정구역에서 169m이격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번지
- (3)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 대지면적 : 793m²

구분	1동	2동	비고
건축면적/연면적	158.44m ² / 253.3m ²	- / 41.81m ²	지하층으로 건축 면적 산정 제외
층수/높이	2층 / 8.55m	지하 1층 / 3.3m	
용도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구조/지붕	철근콘크리트 / 평지붕	철근콘크리트 / 평지붕	

- ※ 참고사항 : 2017년 제6차 민속분과위원회('17.10.18.)에서 단독주택 신축(지상 2층, 최고높이 8.35m) 부결
 - 절토에 따른 풍수적 요소(백호) 훼손, 역사문화환경 진입부 경관 저해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20. 11. 30.)

- 고은리 고택 주변에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 신축하고자 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고은리 고택이 있는 마을 입구 우백호 끝자락에 위치한 것으로 절토가 3m 이상 발생하여 우백호를 상당히 손상시키는 건축 계획임.
- 신축부지는 고은리 고택의 옛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당산 나무가 있고 당산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집성촌을 표시하는 비석이 서 있는 곳이기도 하여 마을의 진입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개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및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정시영 고택 및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개축 행위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문화재지정구역과의 이격거리 21m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및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8번지 및 109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개축
 - 대지면적 : 624m²
 - 건축면적/연면적 : 99.36m² / 99.36m²
 - 층수/높이 : 지상 1층 / 5.3m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기와지붕
 - *기존 주택 : 건축면적 85.59m² /시멘트블록조/지상1층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20. 11. 30.)

- 정수영가옥 주변에 단층의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임.
-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은 기존의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곳으로 이들을 철거하고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의 면적은 약간 증가하지만 창고 등을

철거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효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문화재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가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재료와 색상 등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주변의 창고와 부속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7. 안동 하회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구역 조정 완료(문화재청고시 제2019-60호, 2019. 5. 3.)
 -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세계유산팀 협의 완료(2020. 10. 30.)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외 13개소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84호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85호 「안동 하회마을 원지정사」, 국가민속문화재 제86호 「안동 하회마을 빈연정사」, 국가민속문화재 제87호 「안동 하회마을 작천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88호 「안동 하회마을 옥연정사」, 국가민속문화재 제89호 「안동 하회마을 검암정사」, 국가민속문화재 제90호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91호 「안동 하회마을 양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77호 「안동 하회마을 하동고택」, 보물 제306호 「안동 하회 양진당」, 보물 제414호 「안동 하회 충효당」,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광덕리, 병산리 등 일원

(3) 조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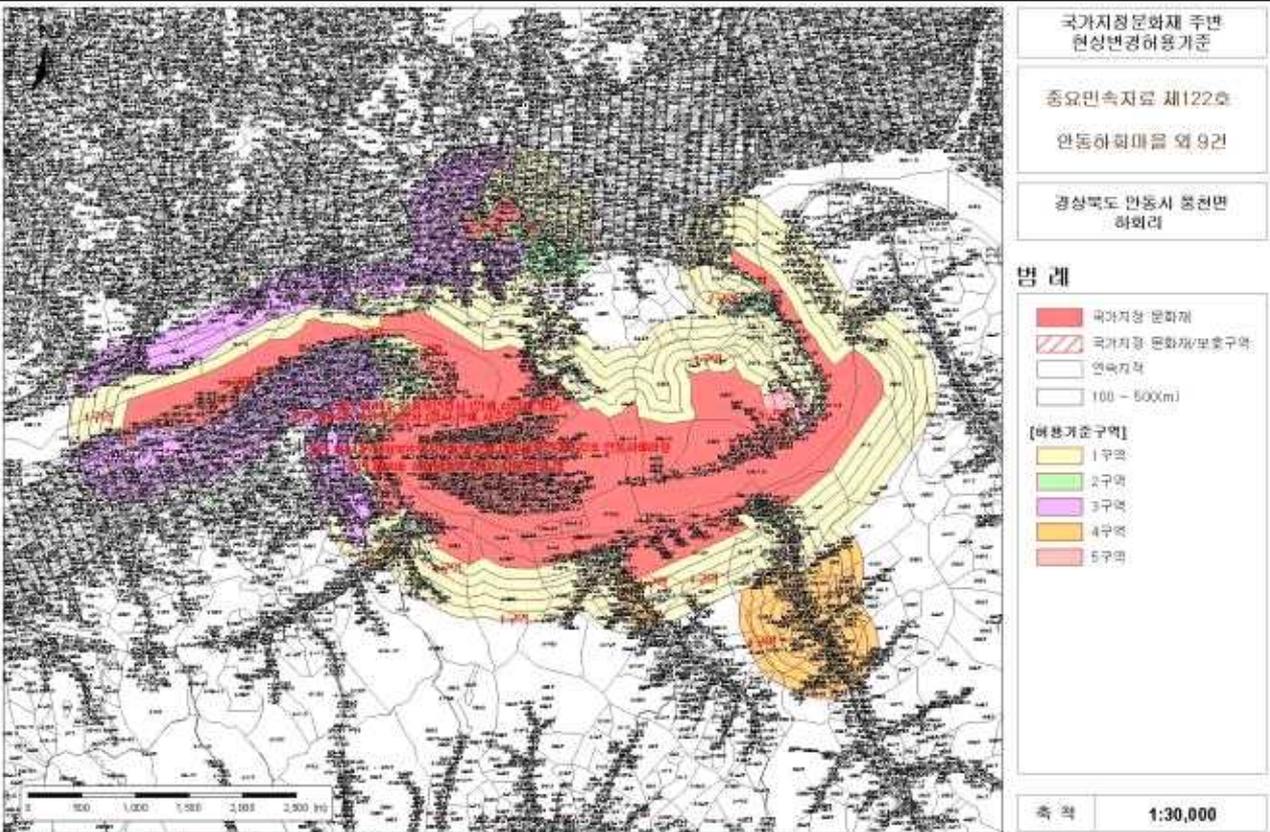
- 설정범위 해제
 - 일부 문화재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범위의 축소로 인하여 범위 해제
- 신규 설정범위
 - 하회마을 주차장과 진입부 일부를 문화재구역으로 편입하여 기존에는 영향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범위가 추가된 부분
 - 문화재구역(하회마을 진입부 및 주차장 일부)

- 신규1구역(개별심의지역)
 - 신규3구역(평8m/경사12m)
 - 문화재구역 편입
 - 1, 2구역 중 일부가 문화재구역으로 편입(하회마을 진입부, 병산서원 진입부, 인금리 일부)
 - 5구역(병산서원 기준에 따름)을 1구역으로 통합
 - 병산서원 허용기준은 1구역(보존구역)에 해당하고 있어, 동일한 1구역으로 변경
 - 설정 완화지역
 - 1구역(보존지역) → 2구역(평5m/경7.5m)
 - : 기존 1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구역에서 배면에 위치한 마을을 2구역으로 완화
 - 2구역(평5m/경7.5m) → 3구역(평8m/경12m)
 - : 3구역 완화는 당해문화재와 문화재 구역의 경계에서 능선 배면에 위치하고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 문화재구역 → 1구역(관련법)
 - : 문화재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세계문화유산 완충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1구역으로 설정
 - 1구역(보존지역) → 4구역(관련법)
 - : 기존 1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구역에서 당해문화재에서 1km 이상 이격된 곳으로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 3구역(평8m/경12m) → 4구역(관련법)
 - : 기존 문화재구역에서 해제된 후, 당해문화재에 위치하고 있는 내성천 건너편에 해당하는 곳으로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지침」의 공통사항 반영
-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10-62호, 2010. 7. 5.)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보존지역	
2구역	· 최고높이 5m(1층)이하	· 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2층)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5구역	· 사적 제260호 병산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 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보수 허용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조 정 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정읍 김명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북 정읍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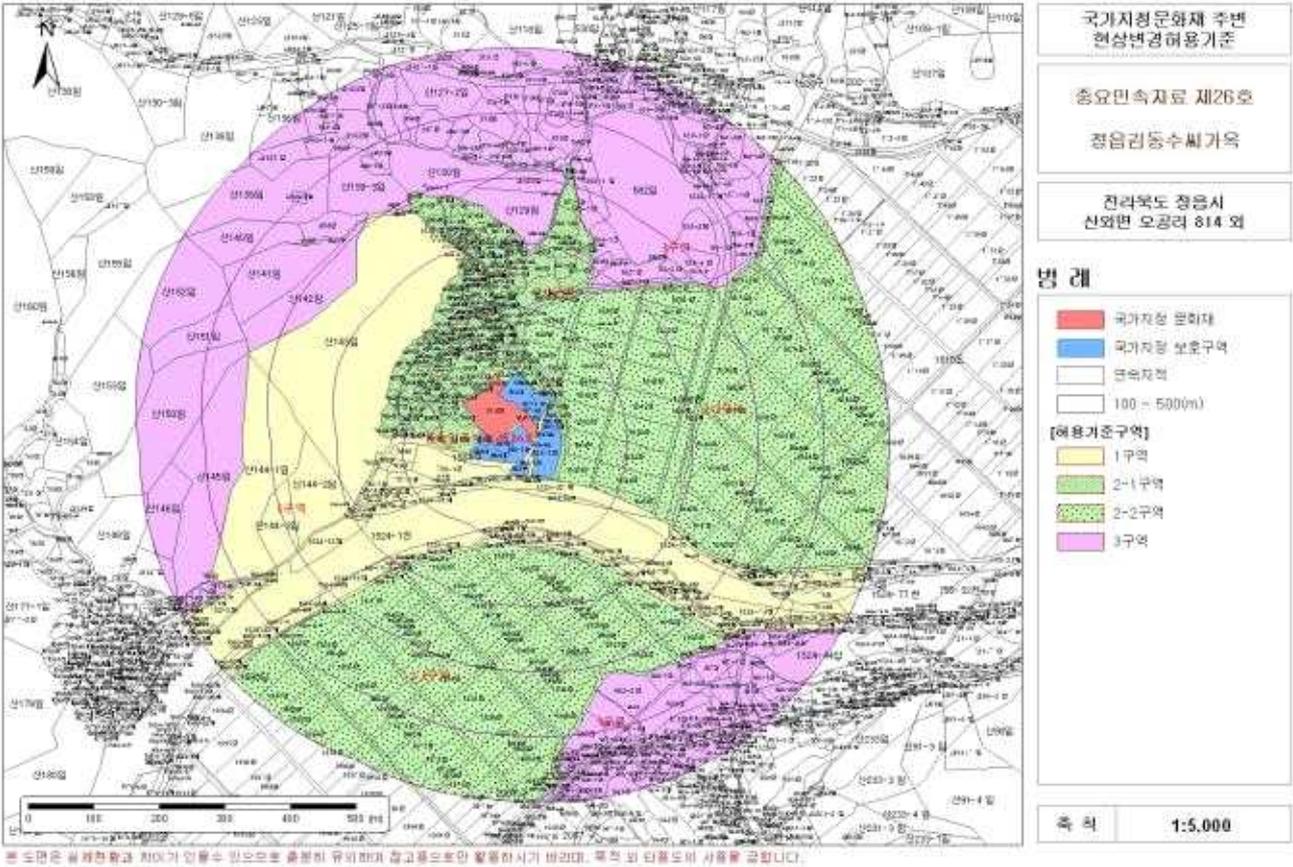
-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2016. 4. 29.)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개정 지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산외면 공동길 72-10(오공리)
- (3) 조정내용 :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 표기방법 등 조정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개별심의
 - 건축물 높이 기준이 층수와 미터로 표기된 경우 미터로 통일
 - 공통사항 반영(문화재보호법상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에 한함)
 -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08-93호, 2008. 8. 25.)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2-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및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및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개·재축 허용
------	--



◆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및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및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허용기준 구역 변경없음

라. 주민의견 청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 표기방법, 공통사항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역을 변경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의견 청취 생략

9. 수원 광주이씨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 수원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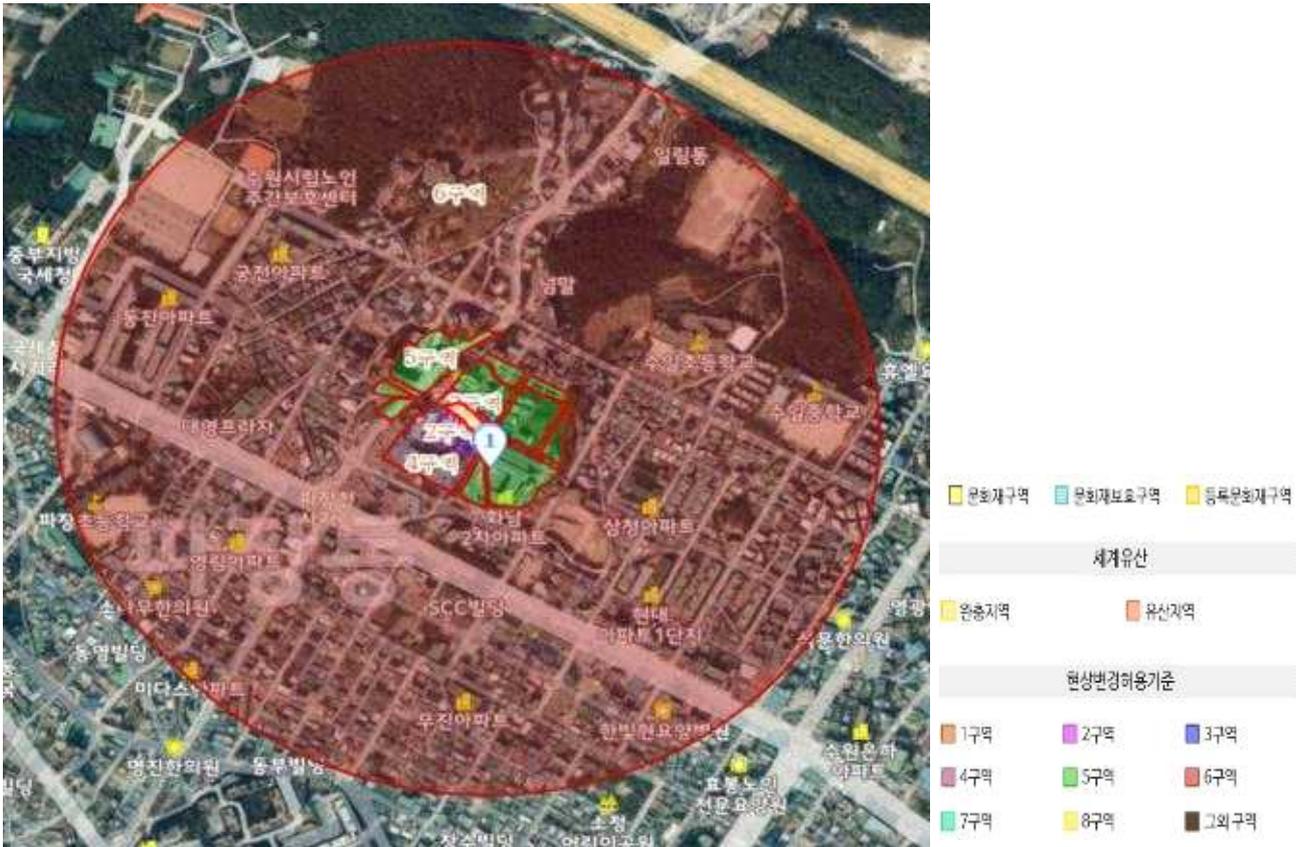
-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개정(2016. 4. 29.)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개정 지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6-9(파장동)
 - (3) 조정내용 :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 표기방법 등 조정
 - 원지형 보존지역 → 개별심의
 - 건축물 높이 기준이 층수와 미터로 표기된 경우 미터로 통일
 - 공통사항 반영(문화재보호법상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에 한함)
-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09-76호, 2009. 9. 11.)

구 분	허용 기준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 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5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6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구역 변경없음

라. 주민의견 청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 표기방법, 공통사항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역을 변경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의견 청취 생략

10. 무안 유교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남 무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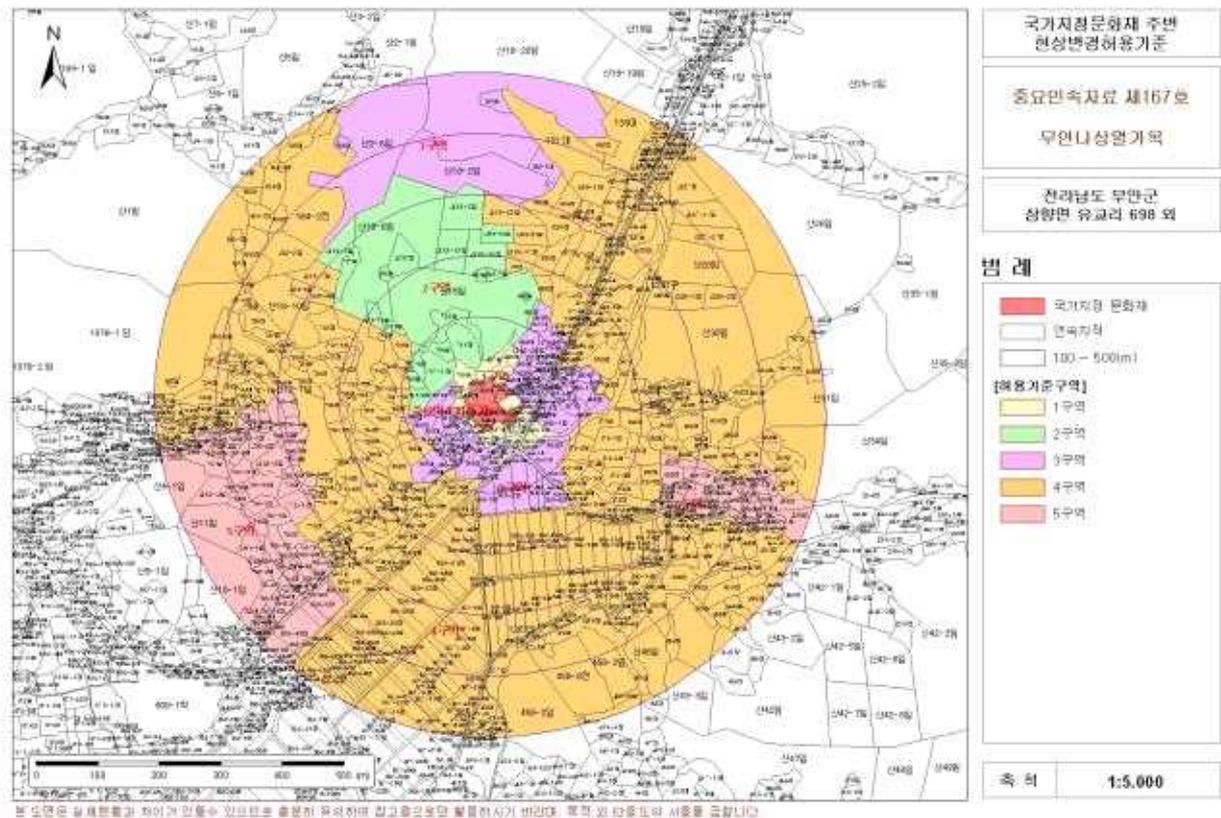
-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2016. 4. 29.)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개정 지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53-5 (유교리)
- (3) 조정내용 :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 표기방법 등 조정
 - 신축불가 → 개별심의
 - 건축물 높이 기준이 층수와 미터로 표기된 경우 미터로 통일
 - 공통사항 반영(문화재보호법상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에 한함)
 -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08-174호, 2008. 12. 23.)

구 분	허용 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 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불가 ○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임야는 원지형 보존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임야는 원지형 보존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공통사항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용 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구역 변경없음

라. 주민의견 청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 표기방법, 공통사항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역을 변경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의견 청취 생략

11. 신안 김환기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남 신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2016. 4. 29.)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개정 지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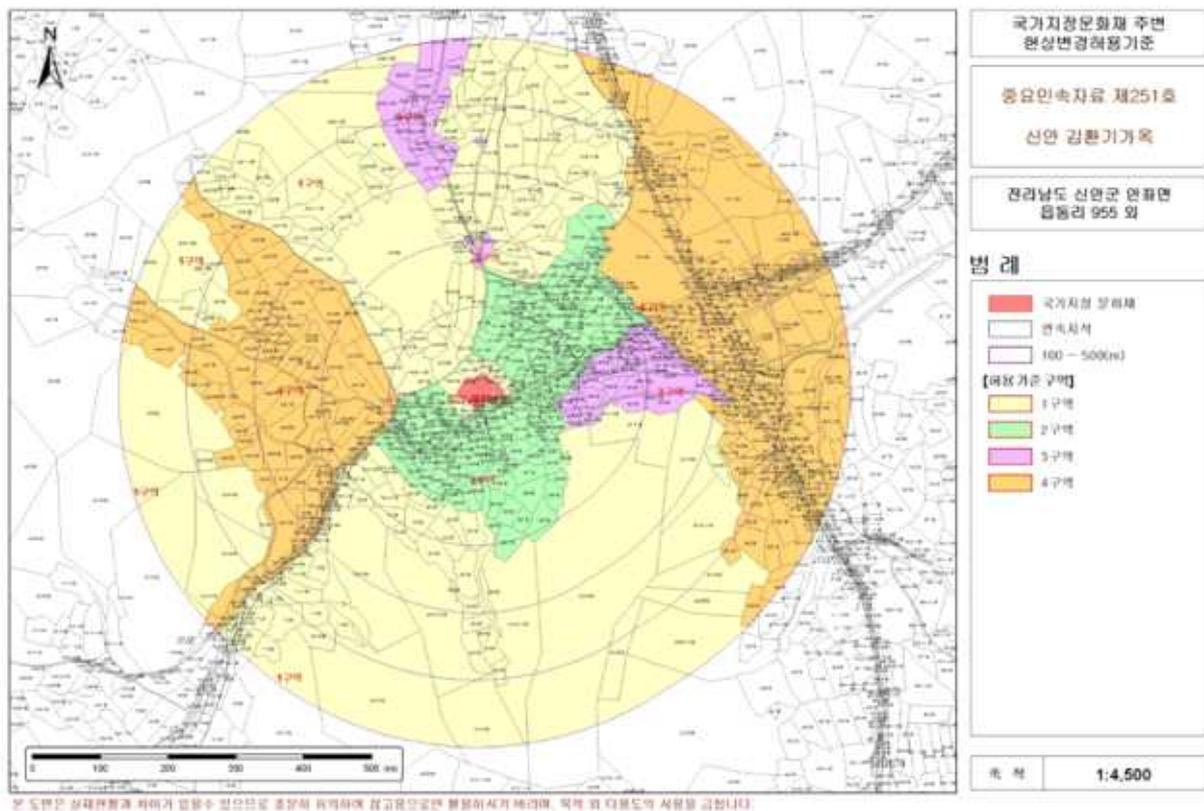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 소재지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서부길 38-1(읍동리)
- (3) 조정내용 :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 표기방법 등 조정
 - 보존지역 → 개별심의
 - 건축물 높이 기준이 층수와 미터로 표기된 경우 미터로 통일
 - 공통사항 반영(문화재보호법상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에 한함)
 -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10-111호, 2010. 11. 4.)

구 분	허용 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 3:10 이상)
1구역	○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 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2층)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4구역	○ 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건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3구역 : 재·건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용 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구역 변경없음

라. 주민의견 청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 표기방법, 공통사항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역을 변경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의견 청취 생략

검 토 사 항

12. 남양주 궁집 종합정비계획 수립(재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의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궁집의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 등 소유자 변경에 따라 남양주시에 자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 ※ 제3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20.06.09.) : 부결
 - 시설물 종류, 규모 등이 부적정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남양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9
- (3) 주요내용

구분	기존(2020.6.9)	금회
주요내용	<p>1단계(~2022) 지생활문화센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집 문화재 정비 : 보수, 화길옹주 생활문화관 공간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 부속사 수리 및 증축(문화커뮤니티, 관람객 편의시설, 카페테리아, 이벤트&공연홀), 부속사 7,8 철거 ·조경정비 : 폐가옥 등 철거, 담장 정비, 조명시설 및 안내시설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 ·진입공간 정비 : 지하주차장 설치(4,700㎡), 안내소 및 매표소 설치, 화장실 등 설치, 대문채 이축 <p>2단계(~2022) 생활문화센터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사 증축(이벤트&공연홀), 무의자전시관 수리 및 증축(기념관&운영사무실) <p>3단계(~2026) 방문자 편의시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시설 조성(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신축), 조경 및 경관 정비 	<p>1단계(~2022) 생활문화센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집 문화재 정비 : 보수, 화길옹주 생활문화관 공간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 부속사 수리 및 증축(문화커뮤니티, 관람객 편의시설, 카페테리아, 이벤트&공연홀), 부속사 7,8 철거 ·조경정비 : 폐가옥 등 철거, 담장 정비, 조명시설 및 안내시설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 ·진입공간 정비 : 지하주차장 설치(4,700㎡), 안내소 및 매표소 설치, 화장실 등 설치, 대문채 이축 <p>2단계(~2022) 생활문화센터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사 증축(이벤트&공연홀), 무의자전시관 수리 및 증축(기념관&운영사무실)

라. 참고사항 : 기 수립 종합정비계획 주요 내용(2017)

-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 야외주차장 설치(주차대수 60대), 화장실 설치 2개소, 매표소 및 안내소 설치
- 기초기반시설 확충 : 배수시설 정비(토사측구 또는 소형 측구), 진입부 포장정비(마사토 포장), 단지내 포장/산책로 조성
- 조경 및 경관 정비 : 기존 연못 정비, 야외공연장 정비, 수로 정비, 야외 조경 정비 등
- 중·장기 정비계획 : 궁집 및 부속사 활용 프로그램, 무의자전시관 리모델링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기존 부속사에 대한 증축 규모 등을 일부 수정하고 보호구역 내 3단계 사업계획을 삭제하여 재검토 요청한 사항임.
- 주차장 지하 설치 및 규모 산정의 타당성, 간정 설치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보고 사항

13.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호 「나주 운흥사 석장승」 보호구역 내 통신케이블 지중화 공사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계		7건	허가 7건									
나주 운흥사 석장승 (국민 제12호)	전남 나주시 나주로 (○○○)	<p>□ 나주 운흥사 석장승 보호구역 내 통신케이블 지중화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 ○ 허용기준 : 보호구역 ○ 신청내용 : 통신케이블 지중화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설치된 상수도 매설 구간을 이용한 통신케이블 지중화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설치된 상수도의 상부에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고창 오거리 당산 (국민 제14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	<p>□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사무소 신축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 허용기준 : 1구역(당산), 3구역(읍성) ○ 이격거리 : 420m ○ 신청내용 : 사무소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동 2층(1층 61.4㎡, 2층 24.85㎡) 신축 - 연면적 86.25㎡, 최고높이 8.1m 경사지붕 <p>※ 참고사항(해당 번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문화재명</th> <th>이격거리</th> <th>허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고창읍성</td> <td>190m</td> <td>제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까지 허용)</td> </tr> <tr> <td>고창오거리당산</td> <td>420m</td> <td>제1구역(보존지역, 개별심의)</td> </tr> </tbody> </table>	문화재명	이격거리	허용기준	고창읍성	190m	제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까지 허용)	고창오거리당산	420m	제1구역(보존지역, 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신청건은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190m이격, 경사지붕 11m까지 허용)에 해당되는 건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고창 오거리 당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또한 고창읍성을 참조하여 완화할 예정이다.
문화재명	이격거리	허용기준										
고창읍성	190m	제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까지 허용)										
고창오거리당산	420m	제1구역(보존지역, 개별심의)										

<p>제주 성읍마을 (국민 제188호)</p>	<p>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장)</p>	<p>□ 제주 성읍마을 내 우수관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23-1~606-1 일원 ○ 허용기준 : 지정구역 ○ 신청내용 : 우수관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목적 : 마을 내 상습침수지역 해소 - 정비내용 : 우수관 매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설규모 : 길이 248m, 굴착폭 1.9~2.8m, 굴착깊이 1.5~2.0m · 콘크리트관(직경 450mm) 103.5m · 수로암거(0.6×0.6m~0.8×0.8m) 144.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우수관을 매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p>제주 성읍마을 (국민 제188호)</p>	<p>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p>	<p>□ 제주 성읍마을 내 건축물 용도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 허용기준 : 지정구역 ○ 신청내용 : 건축물 용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내역 <table border="1" data-bbox="507 936 1107 1106">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당초</th> <th colspan="2">변경</th> </tr> <tr> <th>용도</th> <th>면적(m²)</th> <th>용도</th> <th>면적(m²)</th> </tr> </thead> <tbody> <tr> <td>주</td> <td>주택</td> <td>53.33</td> <td colspan="2">변경없음</td> </tr> <tr> <td>부</td> <td>창고</td> <td>19.3</td> <td>제조업소 (2층근생)</td> <td>19.3</td> </tr> </tbody> </table> <p>* 건축구조 등 내·외부 변동없이 용도만 변경 - 변경사유 : 지방무형문화재 오메기술 기능보유자 (신청인의 누나) 오메기술 제조</p>	구분	당초		변경		용도	면적(m ²)	용도	면적(m ²)	주	주택	53.33	변경없음		부	창고	19.3	제조업소 (2층근생)	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택의 부속건물인 창고의 용도만 변경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당초			변경																			
	용도	면적(m ²)	용도	면적(m ²)																			
주	주택	53.33	변경없음																				
부	창고	19.3	제조업소 (2층근생)	19.3																			
<p>구미 쌍암고택 (국민 제105호)</p>	<p>경북 구미시 해평면 (○○○)</p>	<p>□ 구미 쌍암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 ○ 허용기준 : 2구역(5m) ○ 이격거리 : 240m ○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table border="1" data-bbox="517 1527 1098 1774">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변경</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연면적</td> <td>96.36m²/ 98.25m²</td> <td>111.63m²/ 113.52m²</td> <td>증15.2 8</td> </tr> <tr> <td>층수/높이</td> <td>2층/7.6m</td> <td>2층/7.6m</td> <td>-</td> </tr> <tr> <td>용도</td> <td>단독주택</td> <td>단독주택</td> <td></td> </tr> <tr> <td>구조</td> <td>철근콘크리트</td> <td>철근콘크리트</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변경	증감	건축면적/연면적	96.36m ² / 98.25m ²	111.63m ² / 113.52m ²	증15.2 8	층수/높이	2층/7.6m	2층/7.6m	-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데크를 주방으로 변경하여 면적이 증가한 사항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구분	기존	변경	증감																				
건축면적/연면적	96.36m ² / 98.25m ²	111.63m ² / 113.52m ²	증15.2 8																				
층수/높이	2층/7.6m	2층/7.6m	-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p>남양주 동관택 (국민 제129호)</p>	<p>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p>	<p>□ 남양주 동관택 주변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 ○ 허용기준 : 4구역 ○ 이격거리 : 183m ○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 신축에 따른 옹벽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강토옹벽 : H=0.7m, L=21m - 조립식옹벽 : H=0.6m~4.9m 	<p>○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높이 3m 이상의 석축 발생)에 해당되어 허가신청함. - 문화재와 신청부지 사이에 야산이 있어 가시되지 않고, 신청부지 주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p>울릉 나리 너와투막집과 억새투막집 (국민 제256호)</p>	<p>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군수)</p>	<p>□ 울릉 나리 너와투막집과 억새투막집 주변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57-3 ○ 허용기준 : 2구역 ○ 이격거리 : 233m ○ 신청내용 :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높이 : H=5.7m(Pole H=3m) * 전광판 : H=2.7m, B=4.6m 	<p>○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입구에 재난문자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문화재에서 직접 가시되지 않는 위치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